

# 세부규정 및 서식

Version 2020년 10월

Version 2021년 01월

Version 2021년 02월

## 4단계 BK21 지속가능 화학공학 글로벌 리더양성 교육연구단 내규집

지속가능 화학공학 글로벌 리더양성 교육연구단

2020년 2월



사업단	단 장	배종욱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종욱
	위 원	김재운
	위 원	김진웅
	위 원	박재형
	위 원	방창현
	위 원	유필진
운영위원회간사	간 사	김태일
행정실	행정지원	서지현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BK21 지속가능 화학공학 글로벌 리더양성 교육연구단

# 목 차

## 제 1장. 사업단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사업단의 기능
- 제5조. 재정 및 회계 연도
- 제6조. 사업단장
- 제7조. 참여 교수
- 제8조. 운영위원회
- 제9조. 참여 교수회의
- 제10조. 소집 및 회의
- 제11조. 해산
- 제12조. 기타

## 제 2장. 사업단 구성

- 제1조. 참여 교수
- 제2조. 신진연구인력
- 제3조. 참여대학원생
- 제4조. 산학협력 전담인력

## 제 3장. 사업비 관리

- 제1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
- 제2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제3조. 연구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비
- 제4조. 국제화 경비
  - 가. 정기해외연수(장,단기 해외연수)
  - 나. 해외석학 초빙
- 제5조. 사업단 운영비-실무자 급여
- 제6조. 사업단 운영비-성과급
- 제7조. 기타

## 제 1장. 사업단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 『4단계 BK(Brain Korea)21 사업』(이하 “BK21”) BK21 지속가능 화학공학 글로벌 리더양성 교육연구단의 교육, 연구, 인사, 장학 및 사업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BK21”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대학원을 육성하는『4단계 BK(Brain Korea)21 사업』을 말한다.
- ② “운영”이라 함은 BK21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단의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운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BK21 지속가능 화학공학 글로벌 리더양성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행정실무자 및 참여 학과에 적용된다.

제4조 (교육연구단의 기능) 교육연구단은 아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기주도적 통섭형 화학공학 인재 양성 사업
- ②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인 ChEIIengers 양성 사업
- ③ ‘바이오, 에너지, 정보 소재 화학공정’의 전문 지식과 문제해결형 연구 경험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제5조 (재정 및 회계 연도)

- ① 본 사업단의 재원은 BK21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다.
- ②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 까지로 한다.

제6조 (교육연구단장)

- ① 교육연구단장은 1명으로 하고 교육연구단에서 추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교육연구단의 대표
  - 나.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다. 기타 교육연구단 업무 총괄
- ② 교육연구단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정한다.
- ③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의 진·출입 관리, 신임교수 총원 요청,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
- ④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및 참여 학과의 예산운영 및 조정, 참여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
- ⑤ 교육연구단장은 대학원 참여 학과 교육과정 운영, 대학원생 모집인원 증원 요청 등의 학사 권한을 가진다.

⑥ 교육연구단장은 참여 교수간 경쟁체제 및 차등 보상체계 구축, 미참여 교수 및 지도학생 차등 지원체제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7조 (참여 교수)

- ① 참여 교수는 화학공학과 교수로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BK21 참여 교수로 허락된 자로 한다.
- ② 매년 실적누적평가를 통해 참여 교수의 진출입을 결정한다.
- ③ BK21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은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이 된다.

위원회	위원장	위원	자문
운영위원회	배중옥	김태일, 김재윤, 유필진, 김진웅, 박재형, 방창현	
특채위원회	배중옥	정찬화, 박호석, 박재형	김덕준, 이동현
교육과정혁신위원회	김재윤	채희엽, 이준엽, 김지용	이준영, 최우석
산학협력위원회	김진웅	김덕준, 박호석, 이영관	이동현, 조성민
국제협력위원회	유필진	박재형, 잭맨 (해외석학 2인)	조성민, 정찬화
사회문제해결위원회	방창현	박남규, 방석호, 김정규 (산업체 3인)	이두성, 한귀영 (이기라-외부위원)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예결산 심의 의결
- 2. 사업계획 심의
- 3.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참여 교수회의)

① BK 21에 참여하는 전교수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내규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 다. 사업계획의 승인
- 라. 연구교수의 선정 추천
- 마.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소집 및 회의)

- ① 교육연구단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② 참여 교수 삼분의 일 이상 요구시 단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참여교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 ④ 의결은 참석교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제11조 (해산)

①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이 완료된 날로 해산한다.

제12조 (기타)

① 기타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른다.

## 제 2장. 사업단 구성

제1조 (참여 교수)

- ① 선발기준은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누적실적을 평가하며, 누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교수의 진출입을 결정한다.
- ② 평가항목은 논문, 학회발표, 특허, 연구비, 기술이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신입교원의 경우 따로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진출입을 결정한다.
- ④ 각 항목의 실적 배점표는 하기와 같다.

내역	세부내역	배점	총배점
논 문	환산논문	10점	40점
	환산IF	12점	
	환산Eigenfactor	10점	
	상위 3% & IF 10 이상 논문 가점	8점	
학회발표	국제학회발표		6점
특 허			12점
연구비	정부과제		12점
	산업체 2배, 해외 3배로 계산		
기술이전			10점
사업단기여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최대 10점
총합계			90점

- 논문의 일반배점 32점의 경우(우수논문 가중치 8점 제외), 참여교수 상위 3명까지는 32점 만점을 부여한다.

제2조 (연구 인력)

- ① 신진연구 인력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본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2/3 이내로 제한한다. 단, 지원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연구원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공분야가 사업단과 다른 경우 자교 박사학위 전공 분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② 신진연구 인력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계약 교수는 본교 연구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교육 및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선발한다.
- ④ 박사후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이종소속(타 대학 및 기관소속 휴직 및 연구년

중인 자 포함) 및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직 교원은 제한한다.

⑤ 선발기준은 년차별로 이전 사업기간 1년의 논문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BK21의 논문 평가 기준(환산 논문 및 IF, ES 등 고려)에 의거하여 TO에 해당하는 인원을 평가 순위에 따라서 선정한다.

⑥ 운영위원회를 통해 바이오, 에너지, 정보소재 분야별로 안배한다.

⑦ 각 항목의 실적 배점표는 하기와 같다.

내역	세부내역	배점	총배점
논문	환산논문	10점	40점
	환산IF	12점	
	환산Eigenfactor	10점	
	상위 3% & IF 10 이상 논문 가점	8점	
총합계			40점

⑧ 임용 기간은 BK21 기간 동안 각 교수는 3회까지만 연구교수 및 포스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논문 실적이 주저자 2편/년을 미충족 시에는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포스닥 지원 최소 기준은 논문 주저자 2편/년 기준)

⑨ 신진연구 인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사업단의 목적에 따라 성실히 연구 및 사업단 운영에 관한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 사업단의 연구과제와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신진연구 인력은 연구영역에 따라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의 교육연구단 과제연구를 지도할 의무가 있다.
- 신진연구 인력은 교과목 수업을 할 의무가 있다.

### 제3조 (참여 대학원생)

- ① 참여 대학원생은 BK21+ 사업교육연구단 참여 교수의 학생으로 70%이내로 구성한다.
- ② 참여 교수별 대학원생 구성 숫자는 연구실적 평가 등급에 따라 소폭 차등배분 할 수 있다.
- ③ 참여 대학원생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매년 사업간 년차 개시월에 참여 교수에게 통보한다.
- ④ 참여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전일제 학생으로 4대보험 미가입자 여야하며, 참여학생은 BK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 구성한다.
- ⑤ 참여 대학원생은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구비 의무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참여 대학원생의 졸업요건은 하기와 같다.

과정	글로벌 창의형	산업선도 도전형
박사	(공통) SCI(E)학술지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국제어 학위논문 작성	
	해외석학 학위논문심사위원/자문	산업체 전문가 옴부즈만
	해외방문연구 및 학술대회 구두발표	기업/연구소 공동 연구 및 인턴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연구주제	산업연계 사회문제 해결 연구주제
석사	국제어 학위 논문 작성 및 SCI(E)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화학공학 연구주제 도출 및 타학문단위 전공 수강	

교과목	에너지 화학공학 트랙	바이오 화학공학 트랙	정보소재 화학공학 트랙
공통핵심 교과목	(핵심) 에너지공학특론, 에너지소재특론, 촉매공학특론	(핵심) 생물화학공학특론, 나노의약품특론, 기능성생체재료특론	(핵심) 나노공학특론, 반도체화학공학특론, 디스플레이화학공학
	(심화) 전기화학특론 외 12과목	(심화) 나노생명공학 외 13과목	(심화) 유기전자소자 외 16과목
공통핵심 교과목	화학공학특론, 화공열역학특론, 반응공학특론, 미세전달현상, 기기분석특론, 실험설계및해석, 논문작성법연구윤리, 연구안전관리, 창의융합연구방법론, 빅데이터와통계학		

### 제4조 (산학협력 전담인력)

- ① 대학원생에게 재학 중 산업현장체험을 통해 졸업 후 진로탐색 기회 제공하고, 산업 현장 요구를 사업단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과목(화학공학현장실습연구1,2)을 개설하고 지도교수를 산학협력단 교수로 임용한다.
- ② 산학협력단 교수는 화학공학부 전담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활용한다.
- ③ 산학협력단 교수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 현장실습과목 관리 및 학점부여
  - 현장실습 대상자 선정 및 기업체 선정기어

## 제 3장. 사업비 관리

### 제1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

- ① 예산편성 비율은 BK21의 규정을 준수한다.
  - (미래인재양성사업-과학기술분야)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60%이상
  - 사업단 운영비 : 10%이내
  - 간접비 : 5%이내

②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BK21의 규정을 준수하며,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 제2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① 대상은 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박통합과정생과 입학한지 4년 이내의 박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6년 이내의 석박통합과정생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금액은 하기의 기준을 따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지원에 따라 대학원생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석사 : 월 70만원 이상~ 월 180만원 이하
- 박사 : 월 130만원 이상~월 250만원 이하
- 수료생 : 월 100만원 이상~월 250만원 이하

③ 참여 교수별 배분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매년 연구실적 업적평가, 사업단 주요 운영위원의 기여도 및 지도학생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④ 사업단에서 참여 교수별로 가용 총금액을 배정하면, 각 연구실별로 연구실 상황에 따라 석사, 박사 기준금액 내에서 매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기준금액을 정한다.

⑤ 참여교수 연구실 별로 연구, 특허, 산학협력 및 기여도에 따라서 학생업적을 배점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 학생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장학금 배정 시 지원 학생 명단과 함께 지원 학생 업적 평가서를 제출한다. [양식1. 학생 업적 평가서]

⑥ 석박통합과정 5기 이상 및 박사과정생 중 분야별(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5명씩 선발하여 총 15명에게 우수 ChEIIengers 추가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학기별로 선발하며 분야별 상위 2명은 300만원, 차순위 3명은 180만원 지급
- 연구실별로 1년 동안 수혜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며 학생당 최대 1년 수혜 가능
- 배점표는 하기와 같다.

내역	세부내역	배점	총배점
논문	환산논문	10점	40점
	환산IF	12점	
	환산Eigenfactor	10점	
	상위 3% & IF 10 이상 논문 가점	8점	
총합계			40점

⑦ 참여 교수별로 배정되는 연구장학금은, 전체 참여교수의 연구실 평균금액에 1.5배를 상한선으로 제한하며, 그 차액은 우수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으로 추가 배정한다.

⑧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추가 연구장학금 지급 방법은 하기와 같이 한다.

- 사업 시작 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30일),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참여 대학원생 실적을 조사하여 추가로 장학금을 배정한다.
- 장학금은 하위 50% 논문 10만원, 상위50% 논문 20만원, 상위10% 논문 50만원, 특히 국내 20만원, 국제 30만원으로 추가 배정하여 지급한다.

⑨ 연구실적 독려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도를 인정하여 단장, 실무 교수에 대해서는 석사과정생 1명분의 TO를 추가로 인정해 준다.

⑩ 신진연구 인력을 임용한 교수의 경우, 신진연구 인력 1인을 박사과정생 1명과 석사과정생 1명과 동일한 TO로 취급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배정 시 장학금을 제한한

다.

⑪ BK21 미참여 교수의 경우 참여 교수의 70% 수준의 장학금을 GT10, 심산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⑫ BK21 미참여 교수가 참여 교수와 공동저자로 논문출판에 기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학원생 인건비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 미참여 교수가 참여 교수를 공동저자 게재하여 교육연구단 논문 실적에 기여한 경우에는, 미참여 교수의 논문 실적(참여 교수가 공동/교신저자로 포함된 실적만 계산)을 평가하여 상위 25%까지는 GT10 기준으로 석사과정 학생 1인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⑬ 석박사연계과정 장학생의 경우 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연구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비)

① 신진연구인력 지원 금액은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3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에 지급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교육, 연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첨부1. 타 연구과제 참여, 내외부 강의 승인 신청서]

④ 학과 발령 3년 이내의 심임 교원에게 신진연구인력 1명을 우선 배정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⑤ BK 미참여 교수의 경우에도 신진연구인력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 (국제화 경비)

가. 정기해외연수(장,단기해외연수)

① BK21+사업의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준수하며, 국제화 경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부2. 국제학술대회 기준 충족 여부 확인서]

- 4개국 이상참여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이상

② 정기해외연수 지원 대학원생 선정은 각 참여 교수가 추천하는 우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참여교수님의 연구실에서 1명/년으로 한정하나, 인원이 증원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④ 장,단기 해외연수 시 심사평가서와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귀국 이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양식2. 장,단기 해외연수 계획서], [양식3.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심사평가서]

- ⑤ 국제화경비 집행은 해외여비, 왕복교통비, 학회등록비를 포함하며, 국제학술대회 참석 지원금액 지원은 대학 규정을 준수한다.
- ⑥ 주저자로 발표하는 학생에게 단기해외연수 국제화 경비가 지급되며, 참여교수의 경우 단독으로 해외 출장이 불가하며, 학생과 동반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나. 해외석학 초빙

- ① 대학원생의 국제 감각을 높이고 해외 우수연구에 대한 소개를 위해 유명석학을 초빙하여 해외석학강좌 및 세미나 개설하며, 참여 교수가 추천하는 해외석학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해외석학 교수단에 의한 온라인/오프라인 강좌를 매학기 개설한다.
- ③ 에너지 분야 및 바이오 분야를 격년으로 매년 특별 초청강연(Distinguished Lectureship)을 개최한다.
- ④ 해외석학 초빙 세미나의 경우 교수별로 1명을 추천가능하며, 추가로 해외석학을 초빙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연구역량과 국내외 인지도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 ⑤ 학위논문 서면심사에 참여한 해외석학을 지원한다.

제5조 (교육연구단 운영비-실무자 급여)

- ① 실무자 월급여는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퇴직금 및 인건비, 4대보험료, 성과금 등을 포함한다.
- ②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에 지급한다.
- ③ 성과급 기준은 매년 사업 종료 1개월 전에 실무자가 교육연구단장에게 업무 기술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업무 및 기여 평가는 교육연구단장이 한다.
- ④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의 논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육연구단장,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 (교육연구단 운영비-성과금)

가. 실적 성과금

- ① 실적 성과금은 사업 참여 교수 중 우수성과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 ② 선발기준은 매년 논문, 특허, 연구비, 기술이전, 해외학회발표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 따라 A/B/C 3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금을 지급한다.
- ③ 등급 비율은 상위 20%, 중위 60%, 하위 20%로 구분한다.
- ④ 추가 지급 및 지급 금액, 대상인원 등의 논의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단장,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⑤ 각 항목의 실적 배점표는 다음과 같다.

내역	세부내역	배점	총배점
논문	환산논문	10점	40점
	환산IF	12점	
	환산Eigenfactor	10점	
	상위 3% & IF 10 이상	8점	

논문 가점			
학회발표	국제학회발표		6점
특허			12점
연구비	정부과제		12점
	산업체 2배, 해외 3배로 계산		
기술이전			10점
사업단기여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최대 10점
<b>총합계</b>			<b>90점</b>

- 논문의 일반배점 32점의 경우(우수논문 가중치 8점 제외), 참여교수 상위 3명까지는 32점 만점을 부여한다.

나. 운영 기여 성과금

- ① 운영 기여 성과금은 사업 참여 교수 중 사업단 운영 기여, 참여율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 ② 선발기준은 매년 사업단 운영 회의 참여율, 국내 및 국제 워크샵 운영 및 참여, 연차 및 분기 보고 참여율, 국제 및 산학 협력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 따라 A/B/C 3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금을 지급한다.
- ③ 등급 비율은 상위 30%, 중위 50%, 하위 20%로 구분한다.
- ④ 추가 지급 및 지급 금액, 대상인원 등의 논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연구단장,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⑤ 위원회 활동에 따른 위원과 위원장의 배분 비율을 1/3로 하고 실적에 따라서 2/3을 배정하며 각 위원회의 장이 평가한다.
- ⑥ 평가 시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성과금을 지급한다.

내역	세부내역
사업단 운영 참여율	운영회의
	국내 워크샵
	국제 대학원생 워크샵
실적 보고 참여율	분기 보고
	실적 보고 참여율 연차보고
국제 협력 및 산학 협력 실적	초청 세미나 개최 및 참석
	산학 협력 실적(기술협력 미팅)

제7조 (기타)

- ①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규정(교육부/연구재단)을 따른다.

[첨부1]

타 연구과제 참여( ), 내.외부 강의( ) 승인 신청서 '√' 표시

사업단(팀)명	
---------	--

■ 신청 사유(타 연구과제 참여 또는 주당 6시간이내 내, 외부강의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

■ 신청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위촉구분 : 연구교수( ), 박사후 연구원( ), 대학원생( )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상기인의 신청 내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육연구단(팀)장: (인)

[첨부2]

## 국제학술대회 기준 충족 여부 확인서

- 1) 학술대회명:
- 2) 개최기간:
- 3) 개최국:
- 4) 주관기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기 준	YES	NO
° 4개국 이상 참여 (한국포함)		
° 총 구두발표 논문 20건 이상		
° 전체 발표논문 중 외국인(외국기관 소속) 논문이 50% 이상		

위 국제학술대회는 BK21사업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지도교수: (인)

교육연구단장: (인)

지속가능 화학공학 글로벌 리더양성 교육연구단

[양식1. 학생 업적 평가서]

## BK21 대학원생 업적 평가서

학생명	예시) 성균관	학위/기수	예시) 석사/3기
지도교수	예시) 화학공	학번	예시) 201710004
<b>업적 평가</b>			
구분	세부 내용	실적 내용	
교육 및 연구	논문실적	예시) 주저자 2편, 공동저자1편	
	학술발표	예시) 주저자 1편, 공동저자1편	
	특허실적	예시) 1건	
	학술연구상	예시) 1건	
	교과성적	예시) 3.5/4.5	
산학협력	산업체 연구 및 현장실습 참여	예시) O(10일)	
기여도	지도교수 기여도 평가	Max: 20점	
	사업단 기여도 평가	Max: 30점	
<b>합계</b>			

위와 같이 대학원생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위 학생을 지원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지도교수 : (인)

[양식2. 장,단기 해외연수 계획서]

## 장, 단기 해외연수 계획서

성명		학위/기수	
학번		지도교수	
파견대상 기관			
파견 기간			
지원 금액			
연구 계획			

위와 같이 BK 교육연구단 해외 파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지도교수 : (인)



###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심사평가서

신청자 인적사항	교육연구단 : 지속가능 화학공학 글로벌 리더양성 교육연구단					
	학과 : 화학공학과					
	지도교수 :					
	성명 :		학위/기수 :			
장,단기 해외연수	단기	학술대회명 :				
		학술대회기간 :				
		발표 논문명 :				
		발표 구분 : 구두(    ), 포스터(    )				
	장기	파견 기관명 :				
		파견 기간 :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 가				
		A	B	C	D	E
해외연수의 우수성	국제 명성(60%)					
해외연수 계획서	계획서의 적정성(30%)					
	해외 체류기간 및 지역의 적정성(10%)					
지도교수 평가 의견						

위와 같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지도교수 :                                  (인)